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장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를 일제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위임사무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출장소·직속기관·사업소의 소내 전보권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부 고시 2012-535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읍면동 위임사무를 위임조례에 명시
- 근거법령 및 제도폐지에 따른 사무 삭제
 - 선산출장소장 위임사무
 -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농가 대여 양곡 절량징수 등에 관한 업무” 및 “원리곡 상환징수 유예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무 삭제
 - 농업사 제도 폐지됨에 따라 “농업사의 육성 및 신청” 사무 삭제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관련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사무 폐지
 - 읍면동장 위임사무

-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인장업 영업의 신고 등 4가지 사무 삭제
- 농지소유상한인정제도 폐지됨에 따라 사무 삭제
- 가축자가 사육시설 확인원 발급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 삭제

○ 근거법령 개·폐에 따른 법령명 및 사무명 수정

▪ 선산출장소장 위임사무

- 문서의 접수 및 발송 사무 근거법령 수정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입산신고 해제권,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 근거법령 수정
 - 「산림법」 → 「산림보호법」
- 정주생활권 개발 업무를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로 사무명 수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정비법」
- 농업진흥지역 관리 업무 근거법령 수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지법」
- 위탁영농회사 지도관리 사무와 영농조합법인 관리 육성 지도 사무를 농업법인 육성 및 지도 사무로 통폐합
 - 위탁영농회사 제도 폐지(94.12.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업 법인에 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됨
-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행 사무 근거법령 수정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지정 사무를 농업기계 사후 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로 사무명 및 조문 수정
 - 근거법령 개정으로 사무명 및 조문 수정

▪ 읍면동장 위임사무

-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사무 근거법령 조문 수정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수정
 - 구미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 대형폐기물 수집 및 수수료 부과 징수 사무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사무로 사무명, 근거법령 수정 및 수입기관에서 동을 삭제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수수료 부과 징수 사무는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 관할 청소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수입기관에서 동을 삭제
 - 현재 동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공동묘지 사용허가 사무명을 공설묘지 사용허가로 수정
 - 근거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사무명을 일치시킴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사무명을 농지취득 자격증명 사무로 수정
 - 농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사무명 일치시킴
- 자격증명의 발급 사무명을 자격증명의 발급 사무로 수정
 - 사무명 오기 수정
- 도로법에 의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 및 사무명 자구 수정
- 농지전용 신고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 수정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 공설시장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 구미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 기타 사정변경에 따른 개정

- 선산출장소장 위임사무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사무 삭제

- 시민만족과에서 수행하는 사무
- 읍면동장 위임사무
 - 특별임용시험 제청권 및 소속 공무원 전출입 제청 사무 삭제
 - 읍면동장이 제청할 근거 및 필요성이 없음
 -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
 -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와 일치시킴
 - 본청 또는 타기관 수행 사무 삭제
 -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사무 중 융자금의 상환 사무 삭제
 - 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권한 중 간이상수도 관리 사무를 제외하고 삭제
 -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무 삭제
 - 부정양곡 단속에 관한 사항 삭제
 - 대리경작자의 지정 사무 삭제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를 일제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